

1. 서론

밖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UR과 WTO체제출범 등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안으로는 정보화 규제완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체질개선과 전문화, 건설업계의 EC화, CM제도 그리고 종합건설업면허제의 추진 등의 일련의 파동과 희오리속에 우리 건축계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건축사협회가 창립된지 30여년이 지났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과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도록 되어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서 건축사협회는 이와같은 내외적인 환경과 여건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시련을 혼명하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큰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요점정리해 보자 한다.

건축사협회의 당면과제와 해야할 일(1)

KIRA's Present Questions & Tentative Measure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2. 건축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 논의

1) 건축의 성격

건축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인가? 아니면 수익성과 사업성을 앞세운 경제활동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 두가지의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것인가? 복합되어 있다면 어느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적 해석도 없이 극히 애매모호하기만 하다.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이 우선한다면 소속이 문화체육부에 가깝고 경제논리가 우선한다면 경제부처의 하나인 건설교통부에 소속되는 것이 옳다.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시공(건설)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설이라는 틀 속에 묶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이 경제논리에 더 많이 지배받고 예속되어 있으며 그와같은 인식속에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수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질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경제논리는 양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며 지금까지 정부는 건설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적정책을 우선하여 왔다. 몇차례 문제가 되었던 종합건설업면허제에 대한 논쟁은 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를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의 성격이 크다고 보고 전문성과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내세운 반면 건설회사는 규모경제와 자본에의한 종합화와 경제활동의 논리를 주장하는 등 건축설계에 대한 양자의 시각차가 현저하였던 것을 경험하였다. 건축설계가 디자인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면 건축사는 이에 비중을 두고 활동해야 할 것이며 일반인에게도 그 중요성을 알려야 하고 경제활동을 더욱 중요시 한다면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한다.

오늘의 우리가 건축을 해석하는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 인식과 태도가 건축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건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2) 건축사업무성격과 역할분담 그리고 책임한계

건축사업무는 크게 설계와 공사감리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물을 기획·계획·설계·공사감리·시공·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이며 그 주체는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책임지고 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개념정립과 함께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것이 불분명하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규명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건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차별·업무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건축사가 도맡아 해왔다는 피해의식과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민주화 사회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역할분담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때문으로 본다.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건축사협회의 회원

건축사자격과 면허를 받고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 사무소등록을 하여야하고 이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된다.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되므로 자격과 면허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건축사업무를 하지 못할뿐 아니라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자면 건축사협회는 등록 건축사협회에 해당된다. 개방화와 더불어 세계각국의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배출된 수많은 건축사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마당에 건축사협회는 모든 건축사를 회원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협회안에서 등록건축사와 비등록건축사를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크게 문호를 개방하고 건축사를 모두 영입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그리고 외국건축사의 문호개방에 앞서 국내건축사의 일치 단결된 화합의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워져야 한다. 외부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4) 건축사시험제도

오랫동안 시행하여 오던 건축사자격시험제도를 금년부터 건축사자격시험과 건축사예비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건축사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늦은 감이 있을 뿐아니라 이번의 제도개선이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건축사자격이 대학교육과정과 연계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대학졸업(5~6년제)동시에 자격이 부여되는 국가(예:프랑스, 독일)가 있는가 하면 대학졸업후 실무경력 2년이면 주어지는 국

가(예: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등)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졸업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합격률은 엄청나게 낮다. 그야말로 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건축실무분야에서는 기술인력난과 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극히 부족한데 건축사자격의 배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개방화가 되면 외국에서는 아주 쉽게 자격을 취득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취득이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 한다면 그야말로 불공정한 셈이 될 뿐아니라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자격있는 기술인력이 많아져 국내수요는 물론 해외진출의 여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인력부족에 허덕인다면 해외기술인력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데 기여를 하는셈이 된다. 상호 형평의 원칙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자격시험을 치는 의사·약사 등은 생명을 취급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매우 높은 반면 건축사는 그와 대조적으로 극히 합격률이 낮다는 점에 여러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험에 의해 자격과 면허를 함께 취득하도록 되어있고 면허와 등록이 이어지게 된 현재의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격은 능력제도이며 면허와 등록은 업무수행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허와 등록은 일정한 실무기간을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사무소의 지나친 난립을 방지하고 설계사무소에 많은 수의 건축사자격자가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축사가 수주를 위한 대외활동과 사무소경영에 시간을 보내고 실제 설계업무는 건축사보 등의 도움에 많이 의존한다면 설계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업무수행은 건축사자격이 없는 건축사보 등이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건축설계의 실제적인 실무작업이 건축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축의 질은 높아진다. 건축사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건축사자격이 곧 면허와 등록으로 이어지는 폐단은 하루속히 지양되어야 한다.

3. 건축사협회의 과제

1) 설계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개방화는 안쪽빗장을 풀고 외국업체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외진출의 기회가 많아져야 하며 상호기술교류를 통해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설계분야에 대한 해외진출이 극히 미미한데 비해 국내 대형건축물에 대한 설계는 외국설계회사가 많이 수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설계의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외래문화의 수입과 건설업체의 국내진출의 교두보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극히 안타까운 일이며, 설계의 해외진출은 건설회사의 해외건설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설계와 시공이 상호보완하고 파급상승하는 시너지작용을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수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전략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해외건설은 70년대부터 봄을 이루고 지속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고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설계는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기존 해외진출건설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 대한 정보와 함께 특수한 전략을 마련하여 설계와 시공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설계에 대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2)정보센터의 설립, 운영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무수한 정보속에 살고 있다. 건축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건축계의 현황과 세계의 움직임을 즉각 전달할 수 있는 건축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의 각종자료와 교육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정보센터를 설립해야한다. 특히 건축설계가 용역서어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정보센터는 경쟁력확보, 질적수준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3)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백그운영

국내·외적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설계를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위한 Data Bank를 설치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나 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여,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 필요한 정보, 자료, 기술력을 축적하고 항상, 설계과정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센타와 Data Bank는 하나의 System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개별사무소단위로 할수 없는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성격이다. 우리건축계에도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뱅크의 구축은 회원모두의 절대절명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창작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건축실무의 효율화를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건축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뱅크는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시스템은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각종자료들을 단순히 수집,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체계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적기에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가공하고 설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에 있다. 이에대한 데이터뱅크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각 설계사무소에서 힘을 모아 개발하고, 건축사협회와 각 단체를 창구로 하여 현안들을 연구해야 한다. 한 예로 설계사무소가 설계도면을 건축사협회에 제공하고 이를 서로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4)건축연구소의 설립

건축분야의 연구소를 두어 Think Tank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현재 건축관련 분야 연구소는 국토계획·지역계획·도시계획 및 국가정책제도에 관한 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국토개발연구원과 건축재료·시공·환경 등을 건설기술중심으로 하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있으며, 근간에 주택산업연구원 등 몇 개의 특수목적의 연구소가 있으나, 건축의 기초이론분야와 설계·공사감리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축연구소를 설립하여 건축분야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건축사협회의 권리신장 방안

1)설계제도의 개선

① 보수요율의 체계화 및 정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맨 첫째로 계획설계를 작성하는데 설계계약을 선행치 않으므로써 비능률적인 폐단이 있다. 더구나 그 의뢰인마저 건축주 본인이 아니고 시공자나 소위 부로커인 경우까지 있어 보상기능성 없이, 또한 실현 가능성 없이 공여되는 계획설계의 양과 여기에 쏟는 설계자들의 노력과 경비는 실로 엄청나다. 1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설계하여 하나를 수주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건축설계사무소의 출혈과 경영은 짐작할 만하며, 이것은 결국 설계의 질적 수준이 낮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의 설계사무소의 문제로 국한치 않고 전체로 계산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설계계약을 선행치 않은 모든 계획안은 그 작성과 유통을 금하게 하고 법정 용역비가 보상된 계획안은 협회에 등록, 보존하여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축설계의 용역설계비 요율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 회비 산정 기준표와 건축설계용역 요율표의 문제, 덤핑과 보수율에 의한 인정과제, 해외에 통용될 수 있는 계약서와 시방서 등이 미비할 뿐만아니라 법적대응력도 미비하여 보험 등 보증제도도 거의 되지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건축설계용역 전문회사와 어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웃나라 일본은 실비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로 바꿔 시행하고 있는지 1년이 넘었다.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개방화가 되면 외국의 건축설계요율은 공사비의 7~8%정도로 예상된다. 이 설계비 요율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새롭게 대처해야할 업무개선이다. 외국건축사사무소는 국내건축사사무소와 합동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고부가가치의 알짜는 외국설계회사가 하고 국내 설계사무소는 별 수입도 없이 굿은일과 치닥거리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고급인력이 소요되는 기획·계획·기본설계 등에 대한 용역요율이 책정되어야 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회원상호간 계약전의 업무에 대한 신고를 하는 등 정보활용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불이익과 낭비를 없애야 한다.

② 자료의 공유화 공동이용

설계자료를 자료화 작업을 하여, 자료를 보관하여 필요한 부분을 서로서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자료관리, 도서자료관리, 시방서, 디테일의 코드화 등을 들 수 있다.

2) 감리제도의 개선

① 인력공유 FULL제

설계·감리기술인력의 수요예측을 통한 종합적인 인력 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고급 기술력을 가진 자가 실제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도록 한다. 설계 및 감리관련 협회에서 기술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설계·감리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 등의 기능강화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고급기술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설계·감리기술자 전산화에 의한 건설기술자 관리를 위한 DATA BASE화로 적재적소에 기술인력 활용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기술인력의 현장의 고정배치 보다는 적정공식에 체크할 수 있는 감리인력의 공유full제가 바람직하다.

② 설계감리와 시공감리의 구분

설계감리는 설계자가 필수적으로 하고 시공감리는 대형건축물은 필수적으로, 소형건축물은 선택적으로 하되 1차로 시공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주감리하고 감리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 시공감리는 전수감리가 아닌 표본감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흥보

건축사신문을 발간하여 회원 및 일반인들에게 배부하도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여, 국제설계경기 등의 설계경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건축문화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며, 국민에게 가장 근접한 실용공간 예술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건축이 국민재산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창조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고 건축사의 역할과 기여가 크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4) 회원의 권리신장과 보호

건축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 증진 시키는 일이다. 각 개인의 회원으로서 정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집적된 권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기본적인 권리나 이익의 면에서 별 이상 없는 듯 하지만, 창작권, 경제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침해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창작권 내지는 저작권에 있어서 설계자는 건축주와 허가 관청으로부터 거의 일방적인 침해를 받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과 관공서의 각종 심의와 협의과정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은 많은 부분이 건축사협회

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건축사협회는 개별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펼치고,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사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꼭 필요한 협회가 되어야 한다.

5) 분쟁조정기구설치

빈발하고 있는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건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앞서 행정절차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6) 건축사사무소의 실무수행체제로 대응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축수요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건축실무 역시 프로젝트마다 요구되는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실무 수행체제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국제설계경기와 같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관리기능(CM)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 수행체계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건축사의 역할이 설계만이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설계 이외에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새로운 전문적인 서비스상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건축사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조직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과 실무기반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건축사협회에 있다. 이와같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설계자협회의 성격으로부터 시급히 탈피하여 종합건축용역서비스협회의 성격으로 바뀌어야 하며 21세기 변화 그리고 새로운 건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도 지금까지 수행하여 왔던 단순히 설계와 공사감리업무에서 탈피하여 기획·컨설팅 등 업무영역을 넓혀가면서 수직적으로 전문화, 특성화하여야 한다.

7) 설계업무의 전문화와 협력체제구축

외국건축업계와 경쟁력의 우위에 서려면 먼저 전문화가 필수적이며 분업화와 협력체제를 필요로 한다. 먼저 설계와 시공간의 업무영역의 전문화, 설계회사의 전문화, 건설회사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건축설계는 그 업무 특성상 전문화와 협력체제만 구축하면 설계과제별 대형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설계회사는 운영방법, 프로젝트의 성격과 내용 등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의 다양한 규모가 필요하며, 이들이 과제에 따라 융통성있게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야 한다. 여건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조직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다이나믹한 조직이 효과적이다.